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안)

2026. 3.



인천광역시

<http://www.incheon.go.kr>

[인구전략기획과]

순 서

I. 근거 및 방향	1
II. 현 황	2
III. 세부 추진계획	4
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5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6
3.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7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8
5.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9
6.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10
7.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지원	11
8. 출산지원시설 의료 지원	12
9.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13
10.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14
11.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15
12.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 운영	16
13. 초기한부모가족 우선지원 여건 조성	17
IV. 예산현황	18
V. 행정사항	19

2026년 한부모가족 지원 계획(안)

- ❖ 저소득 한부모가족¹⁾ 이 가족기능을 유지하고,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지원사업을 수행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I 근거 및 방향

1 근거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제25조(비용의 보조)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2 추진방향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지원 등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안정된 환경에서 한부모가족이 거주할 수 있도록 복지시설 등 주거 지원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
- 경제·양육·심리적 위기에 처한 초기 한부모가족을 위하여 적시에 서비스가 우선 지원토록 홍보 강화

1) 저소득 한부모(한부모가족)는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

II 현 황

☐ 한부모가구 현황

* 출처 : 통계청 <2024 인구총조사>, 사회보장통계정보시스템

- 전국 대비 인천시 한부모 가구수 6.9%(전국 4위)
- 한부모가구는 일반가구의 7.9%, 저소득 한부모가구는 한부모가구의 15.5%

(2025.12월 기준, 단위 : 가구)

구분	일반가구	한부모가구	저소득 한부모가구		
			2023	2024	2025
전국 (A)	22,997,120	1,490,965	194,273	199,409	208,020
인천 (B)	1,310,880	103,032	14,750	15,293	16,005
비율(B/A)	5.7%	6.9%	7.6%	7.7%	7.7%

☐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 저소득한부모가족 현황

(2025.12월 기준, 단위 : 가구,명)

구분	계		모자가족		부자가족		조손가족		청소년한부모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가구	인원
세대/인원	16,005	39,643	13,053	32,389	2,740	6,776	117	276	95	202

- 최근 5년간 저소득 한부모가족 현황

- 저소득 한부모 선정 기준의 완화*로 인해 지속적 증가 추세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 60% 이하(2023) → 63% 이하(2024)

(2025.12월 기준, 단위 : 가구,명)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계	14,009	14,473	14,750	15,293	16,005
모자가족	11,246	11,661	11,976	12,476	13,053
부자가족	2,539	2,582	2,556	2,592	2,740
조손가족	53	91	101	113	117
청소년한부모	171	139	117	112	95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단위 : 개, %)

구분	계	출산지원	양육지원	생활지원	일시지원시설
전국 (A)	116	23	39	45	9
인천 (B)	8	1	3	3	1
비율(B/A)	6.8%	4.3%	7.6%	6.6%	11.1%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유형별 현황

(2025. 12월 기준, 단위 : 세대, 명)

구분	시설명	소재지	시설장	입소자		보호기간 (연장)	종사자
				정원	현원		
8개소				78세대 (223명)	48세대 (122명)		39
출산 지원	자모원 (05.2.23)	중구 우현로	이미선	30명	14명	1년6월 (6월)	10
양육 지원	스텔라의집 (06.10.19)	미추홀구 승학길	조영희	10세대 (20명)	7세대 (14명)	3년 (1년)	3
	모니카의집 (10.05.11)	연수구 청량로	이미숙	10세대 (20명)	7세대 (14명)	3년 (1년)	3
	세움누리의집 (09.07.15)	부평구 백범로	최은영	5세대 (10명)	4세대 (8명)	3년 (1년)	2
생활 지원	푸르뫼 Mom&Kids (70.05.16)	연수구 청솔로	이선민	18세대 (54명)	12세대 (26명)	5년 (2년)	5
	빈첸시아의집 (10.12.22)	미추홀구 수봉로	이영애	15세대 (30명)	6세대 (13명)	5년 (2년)	3
	아담채 (07.10.25)	남동구 경신로	강광식	20세대 (45명)	12세대 (26명)	5년 (2년)	8
일시 지원	은혜주택 (07.11.1)	비공개시설	최영미	14명	7명	6월 (1년)	5

Ⅲ 세부 추진계획

□ 2026년도 달라지는 사항

- 한부모가족지원법 지원대상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완화
 - ('25년) 기준 중위소득 63% → ('26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사업명		사업내용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등 지원	확대	• 복지급여 금액 인상 - (추가 아동양육비) 월5~10만원 → ('26년) 월10만원, - (학용품비) 연9.3만원 → ('26) 연10만원, - (생활보조금) 월5만원 → ('26)) 월10만원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개선	• 신청 방식 개선 - ('25) 분기별 신청·지급 → ('26) 연중 신청, 익월 지급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확대	• 세부 내용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th>변경사유</th><th>변경사항</th></tr> </thead> <tbody> <tr> <td>시설 운영비</td><td>물가상승률 반영</td><td> -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 - 하위직 종사자 전년 대비 평균 4.5% 인상 *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td></tr> <tr> <td>정액 급식비</td><td>종사자 처우개선</td><td>- 월8만원 → ('25.7.)월10만원 인상</td></tr> </tbody> </table>	구분	변경사유	변경사항	시설 운영비	물가상승률 반영	-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 - 하위직 종사자 전년 대비 평균 4.5% 인상 *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정액 급식비	종사자 처우개선	- 월8만원 → ('25.7.)월10만원 인상
구분	변경사유	변경사항									
시설 운영비	물가상승률 반영	- 전년 대비 평균 3.5% 인상 - 하위직 종사자 전년 대비 평균 4.5% 인상 * 생활지도원, 관리직, 기능직									
정액 급식비	종사자 처우개선	- 월8만원 → ('25.7.)월10만원 인상									
초기한부모 가족우선지원 여건 조성	신규	• 가족센터 등 '맞춤형 가족서비스' 우선 지원 • 초기 한부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정책 홍보 강화 • 유관기관 연계 및 내실있는 프로그램 운영									

□ 사업내용

1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증진

□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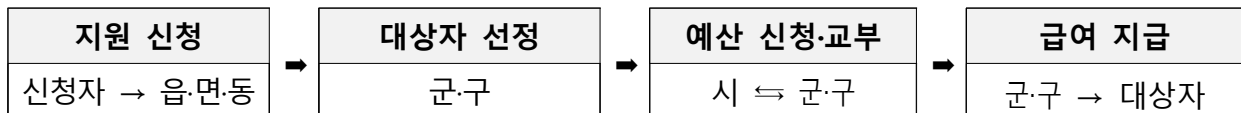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내용), 제25조(비용의보조)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 사업내용

- (기 간) '26. 1. ~ 12.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
- (예 산) 57,526,250천원(기금 46,021,000, 시비 11,505,250) ※ 기금 80, 시비 20
- (수행기관) 군·구
- (내 용)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8세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23만원
추가 아동양육비	• 조손 및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 25세 이상 34세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	자녀 1인당 월 10만원
학용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월 10만원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족	가구당 월 10만원

- (추진절차)



□ 추진계획

- '26. 1. ~ 12. : 사업추진 및 지원(보조금 교부 및 실적관리)
- '26. 7. ~ 10. : 운영점검
- '27. 1. ~ 2.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2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자녀양육환경 개선과 자립기반 조성 도모

□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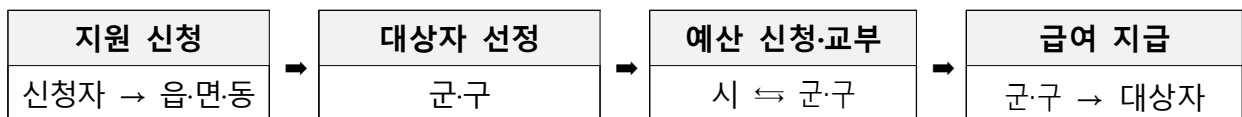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내용), 제25조(비용의보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2(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 사업내용

- (기 간) '26. 1. ~ 12.
- (대 상)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 24세 이하와 자녀
- (예 산) 225,000천원(기금 180,000, 시비 45,000) ※ 기금 80, 시비 20
- (수행기관) 군·구
- (내 용)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아동양육비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의 2세 이상 자녀	자녀 1인당 월 37만원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의 2세 미만 자녀	자녀 1인당 월 40만원
학습지원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검정고시를 준비하거나 재학중(교통비, 교복구입비 등 지원)인 경우	가구당 연 154만원 내
자립촉진수당	• 저소득 청소년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가 학업이나 취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구당 월 10만원

○ (추진절차)



□ 추진계획

- '26. 1. ~ 12. : 사업추진 및 지원(보조금 교부 및 실적관리)
- '26. 7. ~ 10. : 운영점검
- '27. 1. ~ 2.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3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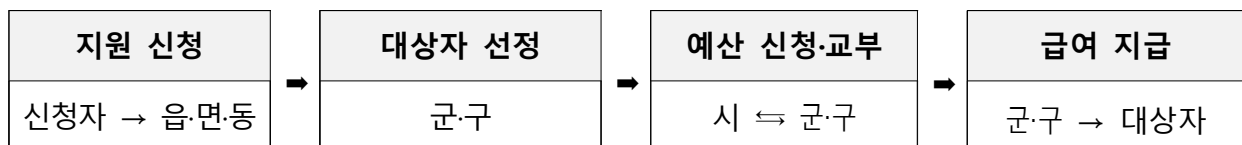
❖ 한부모가족에 난방연료비 지원으로 동절기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내용), 제25조(비용의보조)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 사업내용

- (기 간) '26. 1. ~ 2, '26. 11. ~ 12. (4개월)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
- (예 산) 929,800천원(시비 464,900, 군구비 464,900) ※ 시비 50, 군구비 50
- (수행기관) 군·구
- (내 용) 가구당 연 10만원 난방비 지원
- (추진절차)



□ 추진계획

- '26. 1. ~ 12. : 정책 홍보 및 대상자 발굴 (수시)
- '26. 11. ~ '27. 1. : 보조금 교부 및 실적관리
- '27. 1. ~ 2. : 사업정산 및 실적보고

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확대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의 서비스 질을 높여 한부모가 안정된 주거 환경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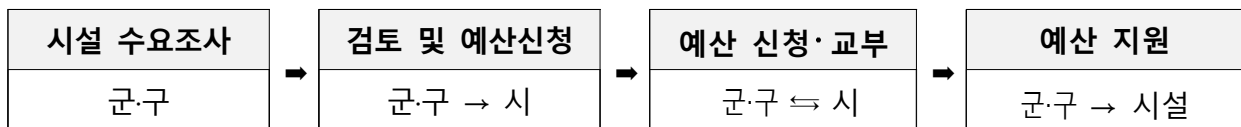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내용), 제25조(비용의보조)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 사업내용

- (기 간) '26. 1. ~ 12.
- (대 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8개소
- (예 산) 3,546,035천원(시비) ※ 시비 100
- (수행기관) 군·구
- (내 용) 복지시설(민간) 운영비 지원

구분	출산지원	양육지원			생활지원			일시지원
시설명	인천 자모원	스텔라의집	모니카의집	세움누리의집	푸르미 mom&kids	빈첸시아의집	아담채	은혜주택
계	705,656	373,167	322,726	259,429	484,782	305,777	697,365	397,133
인건비	603,116	191,216	179,544	158,553	318,426	186,957	472,975	333,727
운영비	61,640	139,191	121,792	69,596	45,729	41,562	51,109	19,956
사업비	40,900	42,760	21,390	31,280	120,627	77,258	173,281	43,450

○ (추진절차)



□ 추진계획

- '26. 1. ~ 12. : 사업추진 및 지원(보조금 교부 및 실적관리)
- '26. 7. ~ 10. : 운영점검
- '27. 1. ~ 2.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5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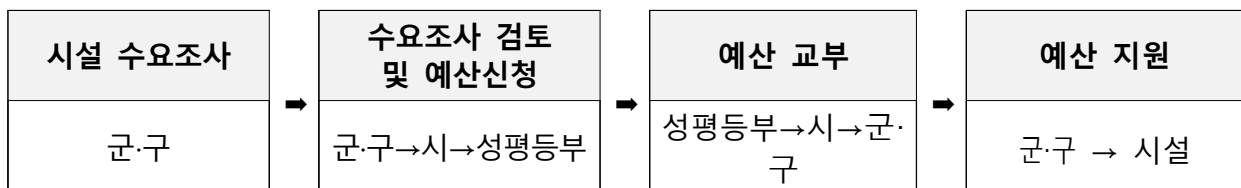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을 통해 심리·경제적 안정 도모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비용의보조)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 사업내용

- (기 간) '26. 1. ~ 12.
- (대 상) 자립의지가 있는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 가족
 - *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 (예 산) 67,000천원(기금) ※ 기금 100
- (수행기관) 남동구 가족센터
- (내 용)
 - 총 22호 ※ 우선순위: 미혼한부모가족(1순위), 부자가족(2순위), 모자가족(3순위)
 - 임대보증금 지원. 단, 관리비 및 공과금은 입주자 부담
 - 입주기간 최장 6년, 2년마다 자격 재심사 후 연장여부 결정
- (추진절차)



□ 추진계획

- '26. 1. ~ 12. : 사업추진 및 지원(보조금 교부 및 실적관리)
- '26. 7. ~ 10. : 운영점검
- '27. 1. ~ 2.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6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 지원 **개선**

❖ 갑작스러운 사고·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생활 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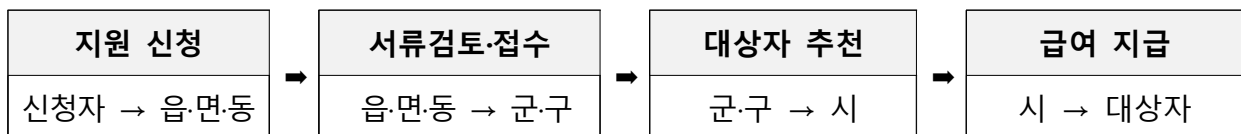
□ 추진근거

-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50조(기금의 용도)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사업내용

- (기 간) '26. 3. ~ 12.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
 - (예 산) 25,000원(시 양성평등기금)
 - (수행기관) 시(직접)
 - (내 용)
 - 본인부담액 50만원 이상 납부한 자에 한하여, 가구당 연 100만원 한도 내 신체적·정신적 치료비 지원
 - 방 법
 - 신청자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수시)
 - 군·구 : 대상자 추천
- ※ 우선순위: 부담액 고액(1순위), 저소득(2순위), 세대주 고연령(3순위)

○ (추진절차)



□ 추진계획

- '26. 3. ~ 12. : 대상자 신청·지급 및 사업 홍보(연중·수시)
- '26. 12. : 의료비 중복지원 확인(시 ⇄ 국민건강보험)
- '27. 1.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7

시설 입소자 상담 · 의료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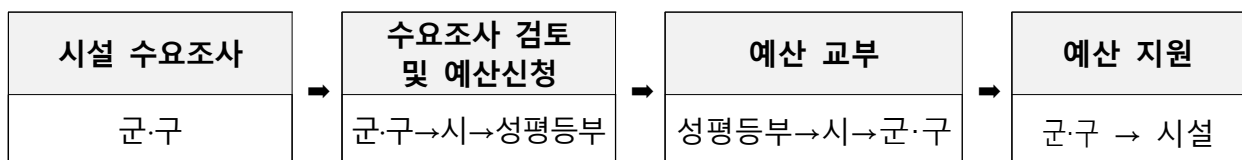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의 심리·정서적 전문상담 및 치료 지원을 통해 가족생활 안정 및 조기 자립 도모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비용의보조)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 사업내용

- (기간) '26. 1. ~ 12.
-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8개소) 입소자
- (예산) 74,482천원(기금 37,241, 시비 37,241) ※ 기금 50, 시비 50
- (수행기관) 군·구
- (내용)
 - 1인당 연 500천원 이내 지원
 - 심리검사비(검사도구 구입비, 검사결과 해석 비용 등)
 - 외부기관 위탁 시 전문상담료 및 치료비
 - 집단상담 및 집단치료비, 가족치유캠프 등 운영비
 - 병원 등 치료기관 통원 시 교통실비
- (추진절차)



□ 추진계획

- '26. 1. ~ 12. : 사업추진 및 지원(보조금 교부 및 실적관리)
- '26. 7. ~ 10. : 운영점검
- '27. 1. ~ 2.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8

출산지원시설 의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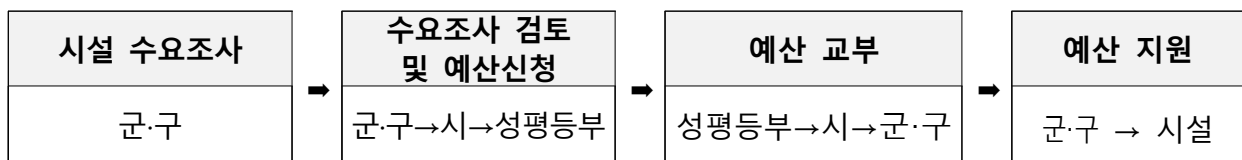
❖ 출산지원시설 입소자의 신체·정신적 질병 치료 등을 위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건강관리 강화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 6(미혼모 등의 건강관리 등 지원)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 사업내용

- (기 간) '26. 1. ~ 12.
- (대 상) 출산지원시설(자모원) 입소자
- (예 산) 6,846천원(기금 3,423, 시비 3,423) ※ 기금 50, 시비 50
- (수행기관) 군·구
- (내 용)
 - 1인당 연 35만원 이내
 - 시설 입소 후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 이전까지의 병원비
 -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비적용 병원비
 - 건강검진, 질병 치료·입원, 진단서 발급, 일반의약품 구입 비용 등
 - 병원 등 치료기관 통원 시 교통 실비
- (추진절차)



□ 추진계획

- '26. 1. ~ 12. : 사업추진 및 지원(보조금 교부 및 실적관리)
- '26. 7. ~ 10. : 운영점검
- '27. 1. ~ 2.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9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립기반 조성을 통한 복지증진

□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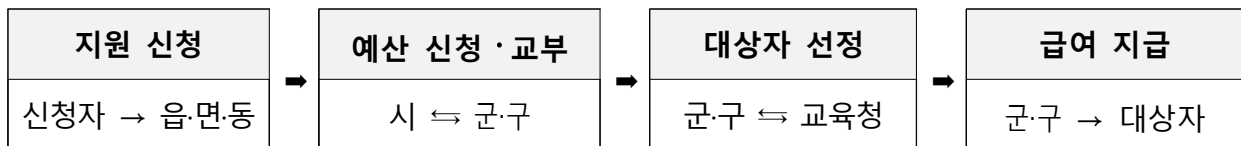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내용),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 사업내용

- (기 간) '26. 1. ~ 12.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초·중·고에 재학 중인 자
- (예 산) 1,447,524천원(시비 723,762, 군구비 723,762) ※ 시비 50, 군구비 50
- (수행기관) 군·구
- (내 용)

지원종류		지원기준	지원금액
초 부교재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등학생	자녀 1인당 연 18.8만원
중 · 고	부교재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29.4만원
	교통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중·고등학생 자녀	자녀 1인당 연 18만원

- (추진절차)



□ 추진계획

- '26. 1. ~ 12. : 사업추진 및 지원(보조금 교부 및 대상관리)
- '26. 7. ~ 10. : 중복지원 확인 및 지원(군·구 ↔ 교육청)
- '27. 1. ~ 2.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10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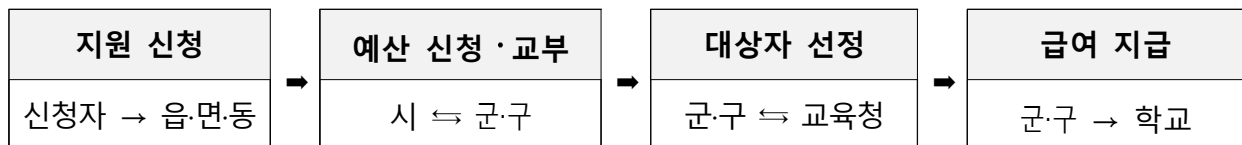
❖ 저소득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건강한 자녀양육환경 조성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내용),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 사업내용

- (기 간) '26. 1. ~ 12.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모·부자, 조손, 청소년한부모)의
무상교육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재학 중인 자
- (예 산) 75,000천원(시비 15,000천원, 교육청 60,000천원) ※ 시비 20, 교육청 80
- (수행기관) 군·구
- (내 용)
 -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외고·과학고) 등의 입학금 및 수업료(실비)
 - 교육청 교육학기 기준 매 분기(초) 지원
- (추진절차)



□ 추진계획

- '26. 1. ~ 12. : 사업추진 및 지원(보조금 교부 및 실적관리)
- '26. 7. ~ 10. : 운영점검
- '27. 1. ~ 2.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11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한부모가족 양육부담 경감 및 자립도모

□ 추진근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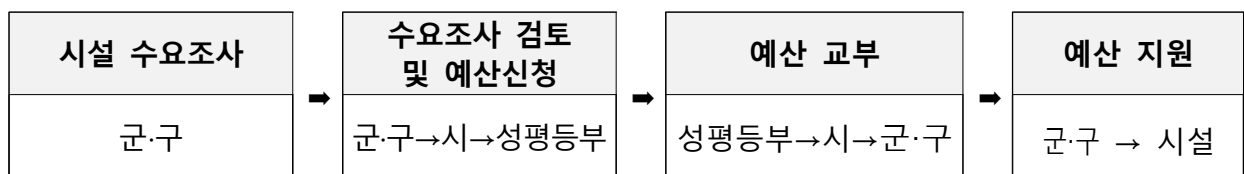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 사업내용

- (기간) '26. 1. ~ 12.
-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8개소), 공동생활가정형(22호)의 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 (예산) 214,286천원(기금 150,000 시비 64,286) ※ 기금 70 시비 30
- (수행기관) 군·구
- (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단가
시설연계 아이돌봄	• 돌보미(1인)이 시설에 방문하여 3~5명의 아이를 돌봄	시간당 18,600원
가정연계 아이돌봄	• 돌보미가 가정에 방문하여 아이를 돌봄 (1:1)	시간당 1,279원

- (추진절차)



□ 추진계획

- '26. 1. ~ 12. : 사업추진 및 지원(보조금 교부 및 실적관리)
- '26. 7. ~ 10. : 운영점검
- '27. 1. ~ 2.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12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 운영

❖ 출생 미등록·영유아 유기 등 문제로 위기임산부 및 영아 보호를 위한
출산·양육 지원 필요

□ 추진근거

-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지원사업)

□ 사업내용

- (기 간) '26. 1. ~ 12.
- (대 상) 미성년 위기임산부, 이혼·사별·학대 등으로 임신·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
- (예 산) 195,060천원(기금 136,542, 시비 58,518) ※ 기금 70 시비 30
- (수행기관) 인천자모원
- (내 용)
 - 24시간 상담 운영, 위기임산부 일시 보호
 - 개인별 맞춤형 복지 지원 및 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등
- (추진절차)



□ 추진계획

- '26. 1. ~ 12. : 사업추진 및 지원(보조금 교부 및 실적관리)
- '26. 7. ~ 10. : 운영점검
- '27. 1. ~ 2. :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13

초기한부모가족 우선지원 여건 조성 **신규**

- ❖ 이혼 사별 등으로 인해 가족구조의 갑작스러운 변화로 경제·양육·심리적 위기에 처한 초기 한부모에게 신속·체계적 서비스 제공

□ 추진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내용), 제25조(비용의보조)
- 「인천광역시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8조 제10호(초기한부모가족)

□ 사업내용

- (기 간) '26. 4. ~ 12.
- (대 상) 한부모가족이 된 날부터 3년 이내의 초기한부모 가족
 - ※ 한부모가족이 된 날 = 신청서 제출한 날 = 책정일
- (예 산) 비예산
- (수행기관) 시, 군·구, 가족센터
- (내 용)
 - 가족센터 등 지역시설 연계 「맞춤형가족서비스」 우선 지원
 - (사례관리) 지역자원 활용 통한 맞춤형 1:1 상담 및 정보
 - (긴급위기) 위기 상황에 대한 심리상담 치료 및 긴급돌봄
 - (생활양육) 생활용품 지원, 보듬매니저 파견, 부모교육 등
 - (교육문화) 문화체험, 체육활동, 자조모임, 가족캠프 프로그램
 - 초기 한부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한부모 지원사업의 홍보 강화
 - 「한부모가족 인식개선 및 공동체 의식 향상」 캠페인 추진
 - 「한부모가족 복지서비스 종합안내서」 등 제작·배포

□ 추진계획

- '26. 1. ~ 12. : 한부모 정책 홍보 및 대상자 발굴(연중)
- '26. 1. ~ 12. : 사업 신청 및 대상자 선정·지원(수시)

IV

예산현황

□ 예산내역: 총 64,408,977천원 (국비 46,620,796, 시비 16,599,519, 군구비 1,188,662)
(단위: 세대/천원)

사 업 명	기 준	합 계	국비	시비	군구비
		64,408,977	46,620,796	16,599,519	1,188,662
소 계 (국비사업)		58,360,104	46,620,796	11,739,308	-
①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57,526,250	46,021,000	11,505,250	-
아동양육비	230천원 인/월	54,088,250	43,270,600	10,817,650	-
추가아동양육비(조손, 미혼, 청년한부모)	100천원 인/월	3,255,600	2,604,480	651,120	-
아동 교육지원비(초·중·고)	100천원 인/연	165,600	132,480	33,120	-
생활보조금 (시설입소가족)	100천원 세대/월	16,800	13,440	3,360	-
②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225,000	180,000	45,000	-
아동양육비	370~400천원 인/월	218,292	175,886	43,658	-
검정고시 등 학습지원	1,540천원 인/연	4,620	3,696	924	-
자립촉진수당	100천원 인/월	2,088	418	418	-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413,794	283,254	130,540	-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지원	상담·의료 치료	81,328	40,664	40,664	-
시설 기능보강 지원	기자재, 보증금 등	51,180	25,590	25,590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서비스 이용료	214,286	150,000	64,286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보증금, 운영비 등	67,000	67,000	0	-
④ 위기임신 지역상담기관 운영 지원		195,060	136,542	58,518	-
소 계 (자체사업)		6,048,873	-	4,860,211	1,188,662
① 한부모가족 지원		2,392,324	-	1,203,662	1,188,662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		1,447,524	-	723,762	723,762
초등학생 부교재비	188천원 인/연	228,252	-	114,126	114,126
중·고생 부교재비	294천원 인/연	247,272	-	123,636	123,636
중·고생 교통비	180천원 인/연	972,000	-	486,000	486,000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실비 분기	15,000	-	15,000	-
동절기 생활안정지원	100천원 세대/연	929,800	-	464,900	464,900
② 한부모가족 질병치료비(기금)		25,000	-	25,000	-
③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3,631,549	-	3,631,549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인건비·운영비·사업비	3,546,035	-	3,546,035	-
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및 관리자 수당	처우개선	56,400	-	56,400	-
시설 종사자 복지점수	처우개선	12,900	-	12,900	-
시설 종사자 종합건강검진비	처우개선	5,600	-	5,600	-
시설 하위직종사자 임금인상	처우개선	10,614	-	10,614	-

- 붙임 1. 급여지원기준 및 중복제한 1부.
2. 2026.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1부.
3. 2025년 추진실적 1부. 끝.

붙임1

급여 지원기준 및 중복 제한

☐ 2026년도 복지급여 지원 소득인정액 기준

구분		1인	2인	3인	4인	5인	비고
기준 중위소득		256만4,238	419만9,292	535만9,036	649만4,738	755만6,719	
저소득 한부모급여		166만 6,754	272만 9,540	348만 3,373	422만 1,580	491만 1,867	중위 65%
청소년한부모(증명서)		184만 6,251	302만 3,490	385만 8,506	467만 6,211	544만 0,838	중위 72%
참고자료	생계급여	82만 556	134만 3,773	171만 4,892	207만 8,316	241만 8,150	중위 32%
	의료급여	102만 5,695	167만 9,717	214만 3,614	259만 7,895	302만 2,688	중위 40%
	주거급여	123만 834	201만 5,660	257만 2,337	311만 7,474	362만 7,225	중위 48%
	교육급여	128만 2,119	209만 9,646	267만 9,518	324만 7,369	377만 8,360	중위 50%

☐ 중복지급이 제한되는 급여의 종류

지원 종류		중복지급 제한 대상
- 아동양육비 - 추가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생활보조금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 -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아동교육지원비 (학용품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교육지원
한부모가족 동절기 생활안정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지원	부 교재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교통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지원
한부모가족 고교생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음

붙임2

2026년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

① 통합관리운영비2)

(기준: 인/원, 단위 : 원)

구 분	출산지원시설	양육지원시설	생활지원시설	일시지원시설
지원단가	169,720	740,170	114,430	141,880

- 공공요금, 냉·난방연료비 등은 입소자가 실제로 사용하는 공간 및 사무공간에만 지원가능
- 통합관리운영비는 건물유지비(건물유지관리에 필요하나 기능보강 사업비로 추진이 곤란하고 긴급한 소요경비), 화재보험료, 공공요금, 수용비, 의약품비, 난방연료비, 차량유지비, 제세공과금, 프로그램 운영비(회의 등 부대경비 포함),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당해연도 협회가입비, 종사자 여비·교육비 등 집행 가능

② 항목별 지원 기준

1. 항목별 내역(공통)

(단위 : 원)

성평등 가족부	학용품비 (인/년)			부교재비 (인/년)		교통비 (중고생 인/240일)	아동 급식비 (인/365일)	미혼모 특수 치료비 (인/년)	*주부식, 취사 연료비 (인/년)	*월동 대책비 (인/1월)
	초	중	고	초	중·고					
지원단가	30,377	49,771	52,734	68,165	108,559	실비	2,886	370,836	10,169	3,647

2. 항목별 내역(시 특화)

(단위 : 원)

인천시	① 자립 정착금 (세대/1회)	② 명절 지원비 (인/연2회)	③ 가족 친화비 (세대/년)	④ 중고생 수학 여행비등(인)	⑤ 가정폭력피해자 치료비(인/년)
지원단가(원)	10,000,000	30,000	50,000	40,000	300,000
인천시	⑥ 영유아 특수치료비(인/년)	⑦ 상담치료 및 부모 프로그램 (시설/월)	⑧ 의료비 (세대/월)	⑨ 자조모임 (시설/년)	⑩ 아동 학습비 (인/월)
지원단가	2,000,000	150,000	100,000	5,000,000	150 ~ 350천원

2) 그밖의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2026년 한부모가족지원 사업 안내(성평등가족부)」참고

【 시 특화사업 세부내용 】

구분		지원대상	지원액	비고
①	퇴소자 자립 정착금	• (대상) 시설 3년 이상 거주 후 퇴소자 - 관내 시설 간 입.퇴소시, 거주기간 합산 인정 - 관외 시설 전입자는 관내 시설 거주 1년 이상 시, 합산하여 3년 * 입소기간의 연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며, 시설 간 전원의 경우만 인정 • (방법) 사용계획서 제출[서식5], 최초 1회 본인 명의계좌 지원	10,000천원 (세대/1회)	
②	명절 지원비	• (대상)시설 입소자 * (제외)특별위로금 지급 대상자 • (방법) - 보장시설 내 시설수급자의 특별위로금 지급시기와 동일하게 지원 - 전월 20일부터 설날·추석의 전일까지 지급 * 설·추석 이후 소급적용 불가 - 명절지원비를 지급받은 후 설날·추석 전 퇴소시에도 반환하지 않음	30천원/2회 (인/연2회)	설·추석
③	가족 친화비	• (대상) 입소자 세대 중 가족 공동체 활동을 시행한 세대 • (내용) 하·동계 휴가 등 가족 모임을 위한 세대별 가족친화비 지원 * 여행, 스포츠경기 관람, 영화관람 등 문화생활. 단, 배달음식 등 가정 내에서 단순 배달을 통한 가족친화비 사용은 불인정	50천원 (세대/년)	실시 확인
④	중·고생 수학여행비 등	• (대상) 시설입소자 자녀 중 수학여행, 현장학습 참여 자녀 • (내용) 수학여행· 현장학습에 참여하는 자녀의 여행 보조금 지원	40천원 (인)	참여 확인
⑤	가정폭력 피해자 치료비	• (대상) 가정폭력 피해 모·부·자 • (내용)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 병원비 및 진료비	300천원 (인/년)	
⑥	영유아 특수치료비	• (대상) 입소자 가정의 영유아 • (내용) 인큐베이터 치료, 질병 등 영유아 치료비, 간병비 등 지원	2,000천원 (인/년)	
⑦	상담치유 및 부모프로그램	•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 (내용) 심리·정서 상담비, 부모교육, 자녀상담, 집단·개별 프로그램 지원 등 * 국비 '입소자 상담·의료지원' 사업 우선 편성, 프로그램 계획·결과 및 만족도·개선사항 등 관리·확인	150천원 (시설/월)	
⑧	의료비	• (대상) 양육지원시설 입소자 • (내용) 시설 입소자 의료·치료비 지원 • (기준) - 연간 120만원 한도 내에서 월 10만원 기준 지원 (미사용액 연내 합산 사용 가능) - 고액 치료 시 입소기간에 해당하는 연간 한도 범위 내 일괄 지급 가능 * 의료비 일괄지급 관련 '환수동의서' 사전 징구 [서식6] - 단, 일괄 지급한 금액이 입소기간에 비례하여 산정한 한도 초과하는 경우, 퇴소 시 초과 지급액은 반드시 환수 - 의료비(실손보험 등) 중복 지원 시 환수 - 반드시 진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등 증빙 확인 후 집행 * 이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 준수	1,200천원 (세대/연)	'26년 지원변경
⑨	자조모임	• (대상) 시설 입·퇴소자 • (내용) 한부모가족 멘토·멘티 연계, 교육·상담·홍보를 통한 인식개선, 문화·체육 활동으로 소통·단합, 시설 입·퇴소자 연계 및 자립지원	5,000천원 (시설/년)	증빙 확인
⑩	입소아동 학습비	• (대상)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아동 • (내용) - 학원·공부방 수강료 및 재료비, 예체능 활동비(음악·미술·체육 등) 지원 - 기준 초과분은 본인 부담, 미충족 시 집행잔액 처리 · 온·오프라인 교육 포함한 출석일수의 50% 이상 출석 시, · 선지급 후 영수증, 수강증 등 증빙 제출 가능 * [지원액 상세] 미취학150천원, 초200천원, 중300천원,고350천원	150천원 ~ 350천원 (인/월)	공약